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4. 15.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2. 2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2. 21.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5. 4. 15)
-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유미 의약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 1차 위반 : 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 : 과태료 20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30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2004. 12. 30 법률제7266호)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음.

안 제5조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 부과하는 것이고, 법 제26조제4항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5조제4항 중 이의가 제기된 때 구청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사항” 란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는 법 제18조에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건강진단 외 예방접종과 순회진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의료행위를 연속적으로 계속할 때에도 매회 신고를 해야 하는가?
- 답변요지(박유미 의약과장) : 오용될 우려가 있어 할 때마다 매회 신고를 해야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 4. 15 한수균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별첨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5. 4. 1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란에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예방
접종과 순회진료 등을 포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 구청장이 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제4항)
-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란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함.(별표)
- 다. “처분통지서”를 “부과처분통지서”로 하고, “이의제기서”를 “이의
신청서”로 함.(별지 제7호 서식)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항중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삭제한다.

별표의 위반사항란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란중 “처분통지서”를 “부과처분통지서”로 하고,
“이의제기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안
수정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③(생략)

④-----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법원에 -----

⑤(생략)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생략)

위반사항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u>건강진단</u> 을 행한 자	(생략)		략)	
(생략)	략)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③(원안과 같음)

④-----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

⑤(원안과 같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원안과 같음)

위반사항				
----- <u>건강진단 등</u> -----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생 략)					(원안과 같음)				
	(생		략)		(원	안	과	같	음)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u>이의제기서</u> 사본 1부. 3. (생략)					첨부 : 1. ---- 부과처분 통지서----- 2. ----- <u>이의신청서</u> ----- 3.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2.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함.

- 1차위반 : 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 : 과태료 200만원, 3차위반 : 과태료300만원

3. 제정근거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05. 1 .20 ~ 2.11 (특이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2.1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구청장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는 곳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태료 :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 특별 시 마 포 구 청 장 (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업소명(시설명)			
	소재지			
행정 처분내역	처분관청		통지일자	
	처분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발 신 : 마포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 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 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